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71
----------	-------

발의연월일 : 2026. 2. 13.

발 의 자 : 정을호 · 조정식 · 문정복
차지호 · 윤종균 · 김문수
전현희 · 한민수 · 박지원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국가 차원의 운영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어 대학 인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 규정은 상담과 조사 업무의 겸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보조를 의무화하고, 상담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각각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설 등).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③ 인권센터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과태료) ① 제1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상담 업무와 조사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인권센터) ①·② (생략) <u><신설></u>	제19조의3(인권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인권센터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u> <u>④ -----</u> <u>-----</u> <u>-----보조하여야 한다.</u>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u> <u>④ (생략)</u> <u><신설></u>	<u>제65조(과태료) ① 제1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상담 업무와 조사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u>